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해산물 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정보공개서

(주)위어스컴퍼니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주의 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삼바리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18122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8.11.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8.16.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삼바리 가맹사업본부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34번길 42, 2층(명륜동)		
대표번호	1899-9267	이메일	weuscompany@naver.com
팩스번호	051-626-8994	홈페이지	sambari.co.kr

- 목 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5**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0**
 - 1.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삼바리]를 시작한 날
 - 2.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삼바리] 연혁
 - 3.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삼바리] 업종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삼바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5. 바로 전 3년간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삼바리] 가맹점 수
 - 6.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삼바리]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7. 바로 전 사업연도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삼바리]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8.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삼바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11. 가맹금 예치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5**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회해
- 3. 형(刑)의 선고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6**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4**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6.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1**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3**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5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훈련의 주체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47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별첨1]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 [별첨2]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 [별첨3] 직영점·가맹점 현황
- [별첨4] 가맹금 예치신청서
- [별첨5] 물품공급목록
- [별첨6]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 표지	주 소			
(주)위어스컴퍼니	해산물 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34번길 42, 2층(명륜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06.29.	2022.07.18.	박상원, 김성곤	1899-9267	051-626-8994
	법인등록번호	180111-1452167	사업자등록번호	638-87-02406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박상원	해산물 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34번길 42, 2층(명륜동)		
	김성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유림		박상원, 김성곤	1899-9267	051-626-8994
사용인 (임원)	박상원 / 삼바리	해산물 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29번다길 18-1(명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상원	1899-9267	051-626-899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다음과 같이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기업의 가맹사업일부를 인수함	삼바리	해산물직화구이 전문점삼바리	2022.07.18.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29번다길 18-1(명륜동)	박상원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해산물 직화구이 전문점으로 당일 공급된 각종 해산물, 조개류, 채소등 가장 신선한 식재료와 체계적으로 교육된 직원들로 각종 모임, 회식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해산물 전문 브랜드입니다.
상 호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 점	보통 지역명으로 표시합니다.
상 표		상품분류 43류 출원인 : 박상원 등록번호 40-1454-9420000 등록일자 2019.03.07.
	삼바리	상품분류: 43류 출원인 : 박상원 등록번호: 40-1695-2860000 등록일자: 2021.02.22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삼바리 브랜드의 로고, 이미지, 심볼

5. 바로 전 3개 사업 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752,069	191,733	560,335	1,410,558	390,833	389,916
2022년	294,308	123,889	170,418	484,492	120,377	120,418
2021년	-	-	-	-	-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 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 경력
-------	----	------	-------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상원	대표	2013.04.30. ~ 2017.11.06	[조개야] 대표	업무 총괄
			2017.11.06. ~ 2022.07.18.	해산물 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대표	업무 총괄
			2022.06.29. ~ 현재	(주)위어스컴퍼니 대표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가맹사업 총괄
	김성곤	대표	2022.06.29. ~ 현재	(주)위어스컴퍼니 대표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가맹사업 총괄
	이유림	사내이사	2022.06.29. ~ 현재	(주)위어스컴퍼니 사내이사	업무 지원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해당 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 (명)		직원 수 (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임원	박상원	가맹사업 경영	2014.04.30. ~ 2017.11.06	「조개야」라는 (등록번호: 20160889)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박상원	가맹사업 경영	2017.12.15. ~ 2022.07.18.	『해산물 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라는 영업 표지의 (등록번호:20181220)가맹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삼바리	가맹계약상 약정한 범위내에서 사용가능	2021.02.22.	40-1695-2860000	박상원	2031.02.22. (2025.07.27)
 삼바리	가맹계약상 약정한 범위내에서 사용가능	2019.03.07.	40-1454-9420000	박상원	2029.03.07. (2025.07.27)

- 당사는 위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표권 소유자로부터 위 지식재산권을 2025년 7월 2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7년 12월 15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7년 12월 15일)

2.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연혁

Table with 5 columns: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Rows include 삼바리 and (주)위어스컴퍼니.

3.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업종

Table with 3 columns: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 기타 외식. Row for 해산물 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able with 10 columns: 연도, 2023.12.31, 2022.12.31, 2021.12.31. Sub-columns for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Large table with 10 columns representing regional distribution data for various provinces like 광주, 대전, 울산, etc.

5. 바로 전 3년간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가맹점 수

(단위: 개)

Table with 7 columns: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Rows for 2023, 2022, 2021.

□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03]를 확인하십시오.

6.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선정기준

당사는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상한)		연간평균매출액 (하한)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51	566,336	20,382	1,347,295	58,578	180,778	6,066	산출: 50곳
서울	1	해당 없음	-	-	-	-	-	5개 미만
부산	16	597,438	24,510	1,347,295	58,578	261,103	11,868	산출: 16곳
대구	2	해당 없음	-	-	-	-	-	5개 미만
인천	1	해당 없음	-	-	-	-	-	5개 미만
광주	-	-	-	-	-	-	-	-
대전	1	해당 없음	-	-	-	-	-	5개미만
울산	4	660,636	21,310	921,724	34,137	365,095	10,738	5개미만
세종	-	-	-	-	-	-	-	-
경기	1	해당 없음	-	-	-	-	-	5개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1	해당 없음	-	-	-	-	-	5개미만
전북	5	384,808	22,635	506,429	26,654	234,180	13,775	산출: 4곳
전남	-	-	-	-	-	-	-	-
경북	2	해당 없음	-	-	-	-	-	5개 미만
경남	16	526,746	17,213	1,114,823	37,160	270,953	6,066	산출: 16곳
제주	1	해당 없음	-	-	-	-	-	5개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은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직전연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영업기간
2023년	51개	778일 (2년 1개월)

9. 가맹지역본부 (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당사는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및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판촉 지출 내역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 말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단은 구분이 어려워 총액만 기재하였고 그 근거는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를 기재하는 바입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광고 및 판촉활동]을 참조 하십시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금액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 계	-	연중	17,185	17,185	-	
광고비	-	연중	17,185	17,185	-	
판촉비	-	-	-	-	-	※해당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전화번호
국민은행	전지점 및 온라인뱅킹	1588-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 후 “가맹금예치”를 클릭한 다음 ‘(주)위어스컴퍼니’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1588-9999 로 문의 바랍니다.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신청서를 귀하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서식의 내용은 [별첨-04]을 확인하십시오.
-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 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 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대상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체결 동시에 예치	반환 않됨	가맹점 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소요된 소멸성 비용	귀책사유 없는 해지시 정산 후 반환
교육비	5,500	계약체결 동시에 예치	반환 않됨	개점 전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개점전 교육 미 이수 시 반환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합 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현금)	3,000	계약체결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및 로얄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후 잔액을 상환
※ 당사는 귀하가 개점 이후 당사 제공 물품 채무액 증가, 연체 빈도수 증가 등 귀하의 계약위반 정도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이행보증금 추가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비고
합 계	19,500	
가맹비	11,000	부가세 포함
(개점전)교육비	5,5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현금)	3,0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물품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20평)기준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오픈지원비	당사	5,500	165	시공시작3일전	공사전 계약취소	12일지원
인테리어	협력업체	40,000	2,000	시공시작3일전	공사전 계약취소	요청시 (협력사)
간판 등		6,500	-	시공시작3일전	공사전 계약취소	요청시 (협력사)
테트라포트		5,500	275	시공시작3일전	공사전 계약취소	조형물
수조		6,500	-	시공시작3일전	공사전 계약취소	
설비 및 기기		6,000	-	물품공급3일전	상품 미공급시	
집기 및 비품		6,000	-	물품공급3일전	상품 미공급시	
의·탁자 등		3,000	-	물품공급3일전	상품 미공급시	
POS		당사	-	-	설치 3일전	
홍보인쇄물등	당사	-	-	제작 3일전	상품 미공급시	요청시
초도 물품	당사 지역별 협력업체 ¹⁾	-	-	물품공급3일전	상품 미공급시	

합 계	79,000			
※ 표의 금액은 시세 또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매장 실측 후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② 상가 비용은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등록발급, 통신수단, VAN사, 집기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외장덕트배관, CCTV,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자체 시공할 수 있으나 당사의 관리 및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의 설계 및 감리의 대가로 **3.3㎡ 당 금 삼십삼만원(₩330,000 / VAT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의 자체 구입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⑤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1899-9267

-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당사가 점포개발을 대행하는 등 여타의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1) 가맹점의 점포소재지에 따라 공급업체가 결정됩니다. 수산물, 식품, 주류업체(진격수산, 보양수산, 성우수산, 담재수산, 탑수산, 금양유통, 동그랑식품, 신일주류, 대구주류, 디오니주류, 수성주류, 동천주류, 대정주류)

다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조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연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위의 내역중 별도시공 내역은 귀하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가 지정한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일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광고 및 판촉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등	가맹본부	매월 카드매출액의 3.3% 또는 5.5%	익월 5일	반환 안됨	소멸성	영업표지사용 및 영업지역보장 대가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반환 안됨	판촉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	-	-	경우에 따라 실비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가맹본부	실제소요되는 비용중 귀하 부담금	간판변경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증금		해당 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가 요구 시 : VII.1 외 비용 부담	-	-	-	가맹점사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재고관리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 없음				
POS 사용료		매월 49,000원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간 경과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반환 안됨	지연이자 비용정산	해당 지급 항목의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로열티는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귀하가 물류를 공급받을 경우 3.3%, 공급받지 않으면 5.5%가 적용됩니다.

☞ 위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 관리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매출현황 등 감독	수시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회계 처리			
점포 관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 상태, 환경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 가맹점의 청결, 위생, 회계 처리등 점포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정보시스템, 회계장부등을 성실히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3. 계약 종료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상권설정상수수료	330만원	계약기간만료 7일 전까지	가맹금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또한 지난 가맹계약 동안 가맹점 운영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와 협의하여 교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상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양도양수처리비와,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양도양수처리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운영권 양도에 관한 규정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및제한의 7.가맹점운영권의 양도]를 참조하십시오

요.

4)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

-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 전 항에 의하여 정산되고 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 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당사가 강제하는 필수품목은 당사의 오랜 연구와 경험에 의하여 최적의 배합과 가공을 통하여 제조되는 물품(조개구이 특제 양념, 낙지숯불구이 양념, 닭발숯불구이 양념, 닭발숯불구이소스등)으로써 차별화된 맛을 내며 해산물을 3단 또는 4단으로 적재하여 요리할 수 있는 직화 요리 도구입니다.
-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의 필수 공급품목 내역은 [별첨-05:물품공급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귀하가 위표의 거래형태에 “강제” 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위 표의 품목은 조리시에 사용되는 양념, 소스로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황, 고객의 선호에 따라 소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한값과 하한값의 산출은 가맹점사업자의 월 평균사용(소모)량을 추정하여 산출하여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품목은 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구매한 추정구매대금의 합이 높은 순서로 기재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산낙지숯불구이 2마리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명 시정조치 3차 : 2차 서명 시정조치 4차 : 물품공급중단 5차 : 가맹계약해지	(2021년6월기준)
산낙지숯불구이 3마리			
3단조개구이 소			
3단조개구이 대			
문어숯불구이			
닭발숯불구이			
조개탕 소			
조개탕 대			
조개찜 소			
조개찜 대			
낙지연포탕			
문어연포탕			
얼큰조개해물탕			
가리비구이 소			
가리비구이 대			
기타 사전에 협의된 상품 등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구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당사가 지정한 품목은 신상품개발 등으로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구역의 판매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구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구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구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가 지정한 상품·구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구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구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구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산낙지숯불구이 2마리	40,000	-월별 권장가격을 서면에 의한 통지	2,021년 6월 기준
산낙지숯불구이 3마리	53,000		
3단조개구이 소	43,000		
3단조개구이 대	58,000		
문어숯불구이	숫가		
닭발숯불구이	25,000		
조개탕 소	40,000		



조개탕 대	60,000		
조개찜 소	40,000		
조개찜 대	60,000		
낙지연포탕	50,000		
문어연포탕	소 55,000 / 대 75,000		
얼큰조개해물탕	50,000		
가리비구이 소	45,000		
가리비구이 대	60,000		
기타 사전에 협의된 상품 등	숫가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입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어 있는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구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 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비고
	가맹본부	계열회사	
해산물직화구이 전문 외식업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비 고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반경 300m)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다만, 대표 상권, 특수상권 등의 경우 사전 협의 후 설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표시	

- 당사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반경 300m)가맹점을 설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세대수, 거주 인구수, 유동 인구수, 가맹점 간 거리, 지역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등 집합매장 내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

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증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비 고
온라인			해당 없음		
홈쇼핑			해당 없음		
전화권유판매			해당 없음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 판매등을 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의 종류(Menu), 맛의 특징등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주요 역할은 제품의 종류(Menu),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의 신상품정보, 이벤트, 오프라인 매장안내(가맹점위치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7) 그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전연도 말 기준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삼바리] 영업표지로 국내에서 판매된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비중이 기재된 채널은 국내 총 매출액에서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한 비중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온라인 전용상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2)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계약조건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3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p>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p> <p>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p> <p>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p> <p>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p>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p>1.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 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p> <p>2.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p> <p>3.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p> <p>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p> <p>5.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p> <p>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p> <p>7.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p> <p>8.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p> <p>9.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p>	가맹계약서 제34조 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p>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p> <p>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p> <p>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p>	가맹계약서 제34조 4항

<p>우</p> <p>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p> <p>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p> <p>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등 부과 처분</p> <p>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p> <p>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p> <p>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p> <p>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p> <p>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p>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본 계약은 양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수정, 보충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38조 2항
※ 계약의 수정사유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서에 정한바와 같이 기존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비 고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	

	력 발생	
--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양도양수처리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1899-9267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도양수처리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 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가맹계약서 제 26조 를 참조하십시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대리행사·위탁 등

-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제 27조를 참조하십시오.

양도 가능 조건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비 고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회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가맹계약서 제 27조
대리행사	본부승인시 가능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대리 경영	
업무위탁	불가능	※ 제3자의 위탁경영을 인정하지 않음.		

8. 경업금지·영업시간 제한·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2년간 [국내 전 지역]에서 귀하가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 허가 절차	비 고
해산물직화구이 전문 외식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여부 통지→완료	문의: 1899-9267
일반인에게 주류, 식자료를 제공하면서 해산물을 철판 또는 석쇠등에 굽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 일수	비 고
16:00 ~ 03:00	주 6일 이상	문의: 1899-926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3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장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직접 근무	점주의 직계가족 또는 요식업근무 경력이 있는자	• 66㎡(20평)기준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 고	
			담당팀	
매장의 위생, 청결상태등	매장 방문 → 관리항목의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S/V	
근무자 태도	매장 암행방문 → 관리항목의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S/V	
상품의 품질, 신선도등의 상태 및 진열	매장 방문 → 관리항목의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S/V	

당사의 정책준수, 당사가 정한 필수품목등의 상태	매장 방문 → 관리항목의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S/V	
----------------------------	---	----	-----	--

*S/V: Supervisor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지원담당자)

- 당사의 영업장 관리·감독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의 관리항목은 당사의 전략, 고객의 소리(VOC)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와 사전협의를 하게 됩니다.
- 가맹점 관리내역은 가맹점의 평가 및 (재)교육등에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20%	광고비 80%	광고 계획 공고 → 광고실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절차 진행 → 광고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 광고비 확정 통지 → 가맹점사업자 7일 이내 분담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부담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판촉물제작	총 판촉비용의 20%	총 판촉비용의 80%	행사계획 공고 →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실시 →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점사업자 선정하여 최종 부담액 확정 통지 → 가맹점사업자 7일 이내 분담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부담
	할인 행사	총 판촉비용의 20%	총 판촉비용의 80%		
	증정 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20%	증정상품 출하가 80%		
	기타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 행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귀하는 당사가 진행하는 광고 및 판촉에 전국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이 시행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한 행사의 경우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다만,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판촉활동일정, 방법, 소요비용, 가맹본부의 지원요청 사항등이 포함된 “판촉활동계획”을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귀하 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 및 직원 등 피고용인에도 해당됨에 따라 이들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귀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관련계약조문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19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본부에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21조(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공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하지 않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임의로 판매품목을 변경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34조(계약의 해지)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에도 가맹계약서 제29조 제1항(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후 2년내 제29조 제3항(경업금지의무)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종료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8.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을’ 이 제19조 6항(자점매입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필수공급물품을 임의로 구매 또는 제조하여 사용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0. ‘을’ 이 제21조 6항(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등)을 위반하여 레시피 및 조리법, 양념등을 ‘갑’이 교육한 방법과 달리 임의로 변경 또는 대체하여 조리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6조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 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6㎡(약20평) 기준 / 당사 시공시	약 [40] 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 번 항목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38(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제공	D-25(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4(1일)	
가맹금예치	- “국민은행” 가맹금 예치	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등 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기타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D-2~21(20일)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점포 면적 및 위치, 해당 부동산의 현 상황, 공사기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점포환경 개선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

2. 판매촉진 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촉행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은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지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1899-9267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부담	문의: 1899-9267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회사소개, 상품 제조 등 점포운영의 노하우, 고객응대 서비스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 전일	필수
개점 후 교육	본사정책 안내, 제품 품질관리 교육, 제품 평가회 등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당사의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협의	5,500	-
개점 후 교육	추후 공지	당사 부담(예외 있음)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 당사의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해산물직화구이전문점 삼바리] 가맹점사업자로서 효율적인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당사가 정한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수료 후 가맹점운영을 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개점 전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합의에 의하여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교육 이수 정도가 미흡하거나 참여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에는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기간의 연장에 따르는 추가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숙박비·교통비 등 교육비용 이외의 제반 부대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필수로 진행하는 교육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필수 교육을 이수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정한 기간 내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 가정한 기준을 벗어나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교육 기간은 추가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10조 참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VAT 미포함)	비고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899-926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01]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①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② 상표(서비스표)		상품분류 43류 등록번호 40-1454942 등록일자 2019년03월07일 등록번호 40-1695286 등록일자 2021.02.22.	삼바리	
③ 제공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제공일	
	20181220	2021.12.16.	__년 __월 __일	
④ 제공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⑤ 기타 (제공) 사항				
⑥ 제공받은 사실 자필확인란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제공장소 및 제공일시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제공자: (가맹본부)	(인)	
		정보공개서 수령인: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인)	

※본 양식은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재무제표(가맹본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02]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05]

물품 공급 목록(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